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은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87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발 의 자: 이은림, 김경훈, 김규남,
김영철, 김재진, 김춘곤,
김태수, 김형재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박상혁,
박 석, 박영한, 유만희,
이상욱, 이영실, 장태용,
정준호, 최진혁, 허 훈,
황유정 의원(22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가 최근 공개한 2023년도 대중교통 현황에 따르면, 전년대비 지하철(8.93%), 시내버스(4.68%) 등의 이용률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대중교통 이용객이 6.12% 늘었지만, 마을버스만 2.39% 줄어든 81만 3천명 수준으로 후퇴함.
- 이러한 승객 감소는 마을버스 업체의 운영난과 인력난으로 연결되면서 마을버스 운행 중단과 배차간격의 증가, 교통사고 등의 문제를 가져와 시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.
- 이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고충을 해소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구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함(안 제9조제1항제1호).
- 나.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대상 상담 및 조사 연구(안 제9조제1항제2호).

다. 시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(안 제9조제1항제3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필요한 조치를 할”을 “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지원
2.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조사, 연구
3. 그 밖에 시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) ① 시장 및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<u>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9조(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) ①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</u> ----- -----.</p> <p>1. <u>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지원</u></p> <p>2. <u>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조사, 연구</u></p> <p>3. <u>그 밖에 시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(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)를 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(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)를 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처우개선비 지원기준 및 사업규모, 조사·연구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계분석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